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을 생략하고,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경우 정년제 준수가 현저히 저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별지 서식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생략 근거 마련 및 서식 일부 삭제(안 제10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 2) 별지 제7호서식 ③고령자고용률 문항의 경우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을 생략하여 통계적 필요성 없는 질문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나. 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출 생략 및 선별적 제출에 따른 정비(안 제13조 제1항, 13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상 정년제 준수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지방관서의 장이 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2) 별지 제7호서식 ⑤정년 연령 문항에서 60세 미만 정년연령 부분은 조사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정년퇴직자 유무 및 정년퇴직자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선택하는 문항⑧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상 전체 고령자 고용규모에 비해 비자발적 조기퇴직자 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정년퇴직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업주로 하여금 제1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 즉시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00. 00.>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년도)

1. 일반 현황 ※ 작성 및 제출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업 종 (해당 번호1개만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업·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기타	

2. 고령자 고용현황

① 전체 근로자 수(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모두 포함) ※ 용역·파견근로자는 제외(용역·파견회사에서 적음)	55세 이상 근로자 현황		
	② 합계	55~59세	60세 이상
()명	명	명	명

3. 정년제도 운영현황

③ 정년제도 유형 (해당 번호 1개만 ○표)		단일 정년		직급별 정년		직종별 정년		기 타		정년제 없음	
		1		2		3		4		5	
④ 단일 정년 채택기업 정년연령(해당 연령 1개만 V표) ※ 정년 유형 중 “1번 단일 정년제”로 표시한 사업장만 적용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세 이상	
⑤ 정년이 직급, 직종 등에 따라 여러 개일 경우 정년 규정상 최고연령과 최저 연령을 연령 수치로 적음 ※ 부장 65, 차장 63, 과장 62, 대리 61세일 경우 : (최고연령 65, 최저연령 61) ※ 관리직 70, 전문직 65, 생산직 60세일 경우 : (최고연령 70, 최저연령 60)							⑥ 최고연령		⑦ 최저연령		
							세		세		
⑧ 지난 1년간 정년 퇴직자 ☐ 있음 0											

작성자: 소속 부서(팀): , 직책: ,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사업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고령자 고용 현황 제출) (생략) <u><신설></u>	제10조(고령자 고용 현황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 현황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신설></u>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① ----- ----- ----- ----- ----- ----- ----- .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상 전체

고령자 고용규모에 비해 비자발적 조기퇴직자 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정년퇴직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업주로 하여금 제1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